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광고 플랫폼 모니터링 등〉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077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4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7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의4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 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광고의 삭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따라 의료광고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삭제된 의료광고를 재게시한 의료인에 대하여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플랫폼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57조의4(의료광고 플랫폼 모니터링 등)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플랫폼(의료광고를 매개하는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플랫폼”이라 한다)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제57조의3에 따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63조제2항 또는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 이외에 그 의료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92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③·④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되면 제63조제2항 또는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해당 의료광고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③ 플랫폼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삭제된 의료광고를 하였던 의료인등이 해당 의료광고와 동일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재게시할 경우 그 의료광고를 삭제하거나 해당 의료인등의 플랫폼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가 이 법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7조의4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56조는 의료인등(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제1항), 의료인등이라도 그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의 의료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또한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의 방법으로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음(제3항).¹⁾

- 1)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 의료인등이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일부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매체,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등을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현행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²⁾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4의2.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심의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③ 의료인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2.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의료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⑨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율심의기구의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⑪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자율심의기구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로서 자율심을 위한 조직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57조의2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한 의사협회가 자율심의기구로서 각각 다음과 같은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³⁾

- 3) 「의료법」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종류와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사, 의원, 의원의 개설자, 병원, 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는 제외한다), 요양병원의 개설자, 정신병원, 정신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 조산사, 조산원, 조산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사, 치과의원, 치과의원의 개설자, 치과병원, 치과병원의 개설자, 종합병원(치과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합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의사, 한의원, 한의원의 개설자, 한방병원, 한방병원의 개설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요양병원의 개설자가 하는 의료광고의 심의
- ③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 중 의사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치과의사회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한의사회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하고,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1.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5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되,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5.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그 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현황 >

구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 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소속 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전담 부서	의무법제국 의료광고심의팀	정책국 의료광고팀	법무국 의료광고심의팀
상근 인력	9명	5명	6명

자료: 보건복지부, 각 자율심의기구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별 의료광고 심의 실적 >

구분		총 접수건수 (A+B+C)	승인(원안승인+수정승인) (A)	조건부(진행중) (B)	불승인 (C)
의료광고 심의 위원회	2023	16,230	14,926	0	1,304
	2024	20,999	19,068	54	1,877
	2025	23,159	19,121	3,190	848
치과의료 광고심의 위원회	2023	4,944	4,799	2	143
	2024	7,086	6,774	68	244
	2025	5,324	3,657	1,667	-
한방의료 광고심의 위원회	2023	5,859	5,729	-	130
	2024	6,225	6,126	-	99
	2025	9,369	6,766	2,528	75

주) 2025년: 2025.1.1~11.30

자료: 각 자율심의기구

- 참고로, 2018년 개정 이전의 「의료법」(법률 제15522호)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었으나(의협, 치의협 및 한의협에 위탁),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헌법」의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5.12.23.)에 따라 2018년 개정(법률 제15540호)을 통해 사전심의의 주체를 자율심의기구로 변경하였음.⁴⁾

4) (2015. 12. 23. 2015헌바75)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위헌 결정 요지를 살펴보면,

i)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사협회가 사전심의를 행하고 있으나 사전심의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ii) 「의료법 시행령」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직접 규율하고 있으며, iii) 심의기관의 장이 심의 및 재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고, iv)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v) 심

□ 한편, 현행법 제57조의3에서는 자율심의기구가 의료광고의 위법성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매 분기별 제출)⁵⁾.

이는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적정한 처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동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이후의 적극적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⁶⁾.

현재 자율심의기구는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외에 위법사항을 개별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광고 삭제 등을 직접 요청하고, 2차례의 요청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불응시 관할 보건소(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의뢰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참고로,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3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할

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의사협회는 행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

5) 「의료법」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는 법 제57조의3에 따라 의료광고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2020년도 및 2021년도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 중 관련 시정요구사항

<2020년도>

-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적발 시 즉시 차단 요청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구성방안을 검토할 것
-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자율심의기구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시술후기 등의 형식으로 유행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2021년도>

-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건강검진 할인 홍보 및 환자 유치 행위에 대하여 의료광고 사전 심의여부 확인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56조를 위반하거나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⁷⁾

< 현행법상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제재 >

- 시정명령 :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의료법 제63조제2항)
- 업무정지등 :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의한 업무정지 1~2개월 처분기준에 해당
- 형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9조제1호)

보건복지부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제출받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성이 높은 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내용을

7) 「의료법」

제63조(시정 명령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33조제5항·제7항·제9항·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공문으로 송부하여 조사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음⁸⁾

- 이에 개정안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한 의료광고로부터 환자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심의기구가 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의료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하여 자율 규제(self-regulation)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질서 유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플랫폼 의료광고에 대하여 행정청의 삭제명령으로 연결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57조의4제1항은 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플랫폼에 게시된 위법한 의료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광고 삭제 명령을 의료인등과 플랫폼운영자 중 누구에게 내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함.

만약 의료인등에게 삭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라면, 삭제 명령의 대상이 되는 광고를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8) 보건복지부는 자율심의기구가 모니터링한 불법 의료광고 의심사례에 대해 대해 지자체 조사 및 조치 요청 하였음('19년 1,059건, '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지, '22년 286건, '24년 366건)

- 현행법상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⁹⁾을 제외한 다양한 매체(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등)를 통한 의료광고가 가능하나, 개정안은 “플랫폼(의료광고를 매개하는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인터넷 매체)”에 게시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만 삭제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매체 >

구분		예시
법 제57조 제1항 제4호	인터넷뉴스서비스	ex) 네이버뉴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ex) 한국방송공사(www.kbs.co.kr) (주)SBS(www.sbs.co.kr), (주)문화방송(www.imbc.com)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	ex) KBS 쿵, MBC 미니, SBS 고릴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 대상 매체의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대상이 되는 매체 목록을 공유받아 왔으나, 해당 정보통신망법 규정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10헌마47)으로 삭제된 후 현재는 별도로 이용자 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9)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 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 이는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플랫폼 이외에도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가 존재한다는 점, 교통시설, 옥외광고물, 현수막 등의 경우에도 위법한 의료광고가 게재되고 있을 경우 해당 광고의 중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을 플랫폼 의료광고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불법 의료광고 매체별 현황 >

(단위: 개, %)

변수 (합계=10,666)	전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N	%	N	%	N	%	N	%
	10,666	100	2,887	27.07	1,531	14.35	6,248	58.58
광고매체								
교통시설	248	2.33	195	6.75	27	1.76	26	0.42
벽보	43	0.40	15	0.52	-	-	28	0.45
문자	12	0.11	1	0.03	9	0.59	2	0.03
신문	156	1.46	83	2.87	2	0.13	71	1.14
옥내광고물	23	0.22	-	-	23	1.50	-	-
옥외광고물	90	0.84	12	0.42	70	4.57	8	0.13
인터넷매체	9,423	88.35	2,130	73.78	1,219	79.62	6,074	97.22
인터넷신문	348	3.26	179	6.20	162	10.58	7	0.11
전광판	21	0.20	17	0.59	2	0.13	2	0.03
전단지	54	0.51	39	1.35	11	0.72	4	0.06
정기간행물	22	0.21	16	0.55	5	0.33	1	0.02
현수막	226	2.12	200	6.93	1	0.07	25	0.40

주) “2020~2024년(단, 2020년 : 7~12월, 2024년 : 1~3월 통계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21년 11월부터)”

자료: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의료광고 관리방안 연구, 2024.12.

이와 관련하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광고주체인 의료인들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제재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운영자는 기술적 조치의 협력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둘째, 현행법 제57조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의료광고가 게시되기 이전에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자율심의기구가 사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라면, 제57조의3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은 이미 게시된 의료광고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자율심의기구가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것임.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경우 정부가 주체가 될 경우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율심의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것임. 그러나 의료광고 모니터링의 경우 정부의 행정 노력, 의료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 선택에 의해 자율심의기구에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일 뿐,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한 처분은 행정청의 법률상 권한이자 의무임.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의 삭제 요청이 없더라도 현행법 제63조제2항에 근거하여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한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도 법률상 삭제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 없이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한 삭제명령을 요청할 수 있음. 또한, 개정안과 같이 법률상 자율심의기구의 삭제요청 권한을 명시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의 요청에 기속되는 것이 아님.

- ‘의료광고의 삭제’는 현행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율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63조제2항 또는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해당 의료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문언상 모순되는 측면도 있음.

특히, 현행법상 자율심의기구가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의료광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63조제2항 또는 제6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역시 없으나, 일반적으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의료광고의 삭제 명령에 대해서만 법률에서 요청권한을 부여할 경우, 반대해석을 통해 삭제명령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자율심의기구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2018년 제20대 국회 법률 개정 과정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며, 당시 보건복지부는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로 걸러지지 않는 위법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율심의기구 등에게 처분요청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자율심의기구나 소비자단체 등은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하여 당연히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 요청이 없더라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입법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반영되지 않은 바 있음.¹⁰⁾

-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과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임이 명백하게 의심되고,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비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는 있음.¹¹⁾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2023.3.21.)는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로 함께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법한 의료광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의료인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처분 또는

10) 국회의회의록, 제20대국회 제354회 (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2017.11.23.)

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제8조(일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 고발 등)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대안)¹²⁾을 의결하였으나, 동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임기만료 폐기(2024.5.29.)된 바 있음.

- 이 방식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광고를 직접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동시에,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사후적 모니터링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셋째,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부여되어 있으므로, 심의위원회에 처분요청권한을 부여할 경우 요청 대상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비정기적인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음.¹³⁾

□ 넷째, 안 제57조의4제3항은 의료인등이 삭제된 의료광고와 동일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재게시한 경우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광고를 삭제하거나 해당 의료인등의 플랫폼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41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68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0593호) 등 통합조정

1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 '23.12월~'24.2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366건 지자체 조치 요청 -”, 2024.3.11.

이와 관련하여, 이미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된 의료광고와 완전히 동일한 의료광고를 삭제하는 것은 권한 있는 행정청으로부터의 위법성 판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플랫폼 운영자의 추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나, “동일한 내용의 의료광고”에서의 동일성의 범위 판단이나 해당 의료인등의 플랫폼 접속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민간사업자인 플랫폼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삭제하거나 접속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신중검토)

- ☐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에게 삭제 등 명령을 할 수 있음.
- ☐ 또한, 플랫폼 상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플랫폼 상 불법의료광고의 삭제 접속차단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중검토)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2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불법정보로 규정된 사항의 심의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방미심위의 심의 및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 대상임.
- 현행 심의체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신설은 규제 불균형 및 이중규제로 인한 규제 대상자의 혼선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3) 중소벤처기업부 (신중검토)

- 현행 의료법상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 의무(제57조의3)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제63조, 제64조)이 존재하므로 중복규제로 판단됨.
- 또한, 의료광고에 대한 일방적 삭제 권한이 신설되는 경우 혁신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함.

4) 대한의사협회 (수정수용)

- 디지털플랫폼 내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적극 공감함.

- 다만, 유권해석 권한이 없는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가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자율심의기구에 부여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의료광고의 위배소지에 대한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것임.
- 또한, 자율심의기구의 행정적, 비용적 부담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법령 미숙지, 실수 등으로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에 앞서 소명기회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자구절차를 마련하고, 광고의 규모 및 횟수, 경중 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제한(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5) 대한치과의사협회 (찬성)

-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수익을 위해 불법·편법 의료광고를 묵인하는 사례도 있음.
-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자도 불법 의료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불법 의료광고 노출 제한 및 처벌 근거 규정 마련에 찬성함.

6) 대한한 의사협회 (찬성)

-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확산, 불법 의료광고가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제한·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찬성함.

7) 대한약사회 (찬성)

- ☐ 불법 의료광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불법 의료광고의 확산을 예방하고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8)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찬성)

- ☐ 불법적인 의료광고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광고의 신뢰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해당 법안에 찬성함.

9)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수정수용)

- ☐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인등에게 자율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며, 삭제의무는 광고 주체인 의료인등에게 부여하고 플랫폼 운영자는 기술적 조치의 협력대상으로 전환하여 플랫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 플랫폼 운영기준 마련 시 플랫폼 운영자 및 관련 산업계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여 행정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0)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신중검토)

- ☐ 위반 광고에 대한 제재는 현행 의료법에서 충분히 규율되고 있으며, 별도의 플랫폼 모니터링 조항 신설은 중복규제에 해당함.
- ☐ 자율심의기구의 거버넌스 한계와 법령 외 심의 기준 운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의 조항이 신설될 경우,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적정한 광고를 통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